> 도크 내 선박건조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

> > 2014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한돈희 교수
- 제·개정 경과
- 2014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 규격 및 자료
  - HSE, L 148: Safety in docks, 2014
  - HSE, HSG 177: Managing health and safety in Dockwork, 2002
-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2장 작업장 제2조(전도의 방지)~ 제85조(잔재물 등의 처리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의 예방 제618조(정의)~제645조(안전대 등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 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4년 11월 27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도크 내 선박건조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

# 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고 한다) 제1 편 제2장 작업장 제2조(전도의 방지)~제85조(잔재물 등의 처리), 안전보건규칙 제10장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18조(정의)~제645조(안전대등)에 의거 도크 내 선박건조작업으로 인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드라이 도크(Dry dock) 내에서 선박건조작업 시에 적용한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도크(Dock)"란 드라이 도크(Dry dock)를 말하며 플로팅 도크(Floating dock)는 제외한다.
- (나) "도크작업(Dock operation)"이란 선반건조작업 시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 그 외의 작업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 4. 유해인자

도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자는 <표 1>과 같다.

<표 1> 도크작업으로 인한 주요 유해인자

유해인자	위험요인
고소에서 추락	<ul> <li>작업자 고소 출입</li> <li>날카로운 모서리와 접촉</li> <li>판금작업</li> <li>나쁜 기상조건과 조수</li> </ul>
이동차량/장비	<ul><li>● 견인차의 이동</li><li>● 지게차</li><li>● 장비의 위치변동 시 충돌 위험 및 시계 제한</li></ul>
물체의 낙하	▪ 구조물 인양 시 낙하 ▪ 팰릿에서 물건의 낙하
미끄러짐과 헛디딤	▪ 젖은 표면이나 빙판 ▪ 버려진 포장과 팰릿
화재와 폭발	■ 인화성 액체 및 가스 ■ 폭발물 혹은 불안정한 화물
유해·질식성 물질	■유해·위험물질 ■독성물질이나 잔류물이 있는 밀폐공간 ■산소결핍장소
나쁜 기상조건	<ul> <li>출거나 비 오는 날의 집중력 저하</li> <li>뜨거운 날의 '열 피로', '태양열에 의한 화상' 등</li> <li>젖은 바닥, 빙판 또는 강풍이 부는 날의 미끄러짐, 헛디딤과 추락의 위험증가</li> </ul>

# 5. 작업장 내 교통안전

# 5.1 현장 설계 및 운행

#### 5.1.1 보행로와 차량 진입

- (1) 보행로는 화물(Cargo)을 다루는 장소를 가로질러가지 않도록 설계한다. 만 약 꼭 그래야 된다면 안전 출구가 필요하다.
- (2) 차량이 사용하는 램프를 보행자가 사용하게 하면 안 된다.

# 5.1.2 차량운행

(1) 방호장벽이 없는 모서리 부근으로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.

- (2) 모서리로 차량을 운행하려면 적절한 방호장벽을 만들어야 한다.
- (3) 도크 작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응급상황 혹은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 혹은 법집행과 관련된 차량 외에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.

## 5.1.3 차량이 사용하는 구조물

- (1) 차량이 사용하는 구조물은 충분한 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.
- (2) 램프는 설계보다 큰 기울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 일반적으로 무거운 차량과 시설은 기울기가 10%를 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램프표면은 미끄럼 방지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.

#### 5.1.4. 운전석의 운전자

- (1) 그리드(Grid) 상의 스트래들 캐리어(Straddle carrier)의 운전석에는 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자 외에 어느 누구도 탑승해서는 안 된다.
- (2) 스트래들 캐리어가 움직이는 그리드 상에는 어느 누구도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.

#### 5.1.5 보행자/차량 분리

- (1) 동일한 작업장에서 보행자와 차량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.
- (2) 보행자가 고위험지역(예를 들어, 화물을 특수하게 취급하는 장소)으로 들어 가야만 하는 장소에서는 추가적인 조치(예를 들어, 안전작업 장치)가 필요하다.
- (3) 모든 찻길과 통행로는 구분하고 눈에 잘 띄는 표시를 해야 한다. 특히, 통행자와 차량이 만나는 교차지점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.

#### 5.1.6 적재물의 안전

- (1) 적재물은 대형트럭이나 트레일러에 안전하게 실려 있어야 한다. 컨테이너는 연결 장치나 가드로 묶여 있어야 한다.
- (2) 컨테이너나 다른 적재물이 옮겨지는 장소에서는 작업자는 물론 관계자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(3) 차량의 적재물 운반에 관련하여 작업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적재물이 안전하게 운반되도록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.
- (4) 적재물 운반은 두 단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.
- (가) 최초 운반단계(예를 들어, 상・하역 위치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)
- (나) 안전한 장소에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운반단계(예를 들어, 배달이 나 저장을 위한 도로 이동)
- (5) 짧은 거리도 적재물이 안전하게 이동되어야 한다. 적재물 고박작업 시 작업 자에게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.

#### 5.1.7 차량이동

- (1) 적절한 신호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.
- (2) 속도제한을 설정하고 운전자가 속도에 따르도록 지시한다.
- (3) 방문차량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(4) 가능한 한 후진은 피한다.
- (5) 갑판 위의 리프팅 트럭은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(6) 운전자의 시계가 불안정하고 운반 통로를 잘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운 반 작업방법을 개발하여 시행한다.

## 5.2 차량 안전

#### 5.2.1 브레이크

- (1)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밖으로 나오면 항상 브레이크는 채워져 있어야 한다.
- (2) 일부 롤 트레일러(Roll trailer)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. 트레일러 운반 차량은 트레일러를 정지시킬 충분한 브레이크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.

#### 5.2.2 주차

모든 차량은 주차 시 주차브레이크를 채우든지 혹은 상응하는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#### 5.2.3 유지관리

- (1) 도크 구내에 들어와야 하지만 도크작업과는 관련이 없는 차량의 경우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조사나 운반업체가 져야 한다.
- (2) 모든 차량에는 업무와 위치에 맞는 적절한 조명이 주어져야 한다.
- (3) 후진 중에는 시각과 청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조치 예를 들어, CCTV, 근접센서, 후진 경보음 등으로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.
- (4) 차량이나 트레일러에 올라가야 하는 작업에는 안전계단/사다리, 미끄럼 방지 통로와 가드레일이 공급되어야 한다.
- (5) 적재물의 안전을 유해서 리프팅 트럭에는 리프트 부속품 예를 들어, 릴 크램프(Reel cramps) 등이 사용되어야 한다.
- (6) 불필요하다거나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지 않는 한 차량에는 좌석 벨트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여부를 관찰해야 한다.

(7) 트레일러는 고정 시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.

#### 5.2.4 연료공급

- (1) 연료공급차량의 안전정비는 화물갑판이나 선박 화물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- (2) 밀폐공간이 아닌 안전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연료나 LPG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.

#### 5.3 운전자 안전

- (1) 사업주는 운전자들의 기록을 관리하고 운전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한다.
- (2) 운전자와 장비 조작자는 수행하고 있는 일이 자신들에게 적합한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.
- (3) 음주나 약물 복용으로 작업에 지장을 준 자는 부적합자로 판정한다.

#### 5.3.1 운전자 안전

- (1) 운전자는 작업 중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.
- (2) 사업주는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따르는지 관찰해야 한다.
- (3) 운전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사업주에게 알리는 등 안전보건에 대한 1차적 인 책임을 져야 한다.
- (4) 운전자는 적합한 개인보호구(PPE)를 착용해야 한다.
- (5)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약물은 복용하지 않는다.

## 6. 고소작업

고소작업은 작업 관련 사상자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내는 원인 중 하나이다. 도크 작업에서는 일반 작업행태, 유지관리 혹은 예상하지 않았거나 계획하지 않은 고소작업에서 추락이 발생할 수 있다. 여기에 추가적으로 물로 추락할 경우 익사의위험이 따른다. 도크의 고소작업에서 전형적인 유해인자는 다음과 같다.

- (1) 현측(舷側)사다리(Accommodation ladder), 도교(渡橋)(Gangway)로 이동
- (2) 고박 및 고박풀기 작업
- (3) 개방된 모서리나 가장자리에서 행해지고 있는 작업
- (4) 갑판 작업장으로 통하는 출입구 출입 시
- (5) 상 · 하역작업과 판금작업 중 차량과 트레일러에서 추락
- (6) 유지보수와 계획에 없던 작업
- (7) 장비와 기계류에서 추락
- (8) 계류장의 계선주(繫船柱) 작업

#### 6.1 선박으로 진입

- (1) 모든 현측사다리, 도교는 안전하게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.
- (2) 안전한 진입방법이 없는 곳에서는 고정사다리가 사용되어야 한다.
- (3) 물로 추락하여 익사의 위험이 있는 출입구와 그 주위는 안전네트를 설치해야 한다.
- (4) 강한 바람, 비, 눈, 시계제한, 조수나 상·하역작업에 의한 선박의 기울음 등은 고소작업의 위험을 가중시킨다.

(5) 깊은 화물칸이나 크레인 작업같이 고립된 장소의 작업자에 대한 응급구조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.

#### 6.2 고소작업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

- (1) 고소 작업자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
- (2) 개방된 모서리 부분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유해성의 확인과 안전거리를 결정한다.
- (3) 가능하다면 고소작업을 피하고 바닥에서 긴 도구를 갖고 작업한다.
- (4) 고소작업을 피할 수 없다면 추락방지 조치 예를 들어, 가드레일, 이동식 승 강기를 이용한다.
- (5) 추락의 위험이 있다면 추락 거리와 부상을 최소할 수 있는 장비 예를 들어, 네트, 에어 백, 추락방지장비를 사용한다.
- (6) 나쁜 기상조건은 추가적인 위험이 따른다.

#### 6.3 도크 모서리부분의 펜스(Fencing)

- (1) 사람이 물로 추락할 수 있는 도크나 모서리 부분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곳에는 펜스를 쳐야 한다.
- (2) 물로 추락하든 아니하든 좁은 진입로의 모든 개방된 부분은 펜스를 쳐야 한다.
- (3) 작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에서 이 같은 조치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
- (4) 비방호된 부두 모서리 1 m 이내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적절한 PPE 예를 들어, 라이프재킷이나 부력재킷(Buoyancy aids)을 착용해야 한다.

(5) 동료의 시야에서 벗어난 단독 작업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다.

## 7. 인양작업

도크에서는 많은 인양장비들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갠트리 크레인(Gantry cranes), 슬로잉 크레인(Slewing cranes), 지게차 등이 포함되며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. 전형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인양장비의 고장
- (2) 인양 물체의 낙하
- (3) 움직이는 적재물이나 인양장비에 부딪힘
- 7.1 인양작업의 계획과 조직
  - (1) 적하목록을 참고하여 적재물의 무게를 체크한다.
  - (2) 물품의 운반이나 운반시설이 작업자의 안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.
  - (3) 둘 이상의 인양장비가 동일한 선박에서 작업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.
  - (4) 머리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작업공정 밑으로 지나가지 말고 안 전한 보행로만 사용한다.
  - (5) 인양장비는 용도에 부합되어야 한다. 인양장비는 특히, 사람을 인양하는 장소에서는 예상되는 위험성에 적절한 '안전계수(Factor of safety)'를 추가한다.
  - (6) 머리 위 인양작업은 최소화해야 한다. 사람들이 일할 것 같은 장소나 지나 가는 장소에서 인양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. 적재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

# KOSHA GUIDE

## G - 116 - 2014

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.

- (7) 적재물이 매달려 있어야만 하는 장소는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진입이 통제되어야 한다.
- (8) 물건은 보행로에 위치시키지 말아야 한다.

## 7.2 인양장비의 사용

- (1) 크레인과 장비에 레일이나 가드가 장착되어 있다면 연결, 고정 및 지지 상태가 안전해야 한다.
- (2) 크레인 레일은 일반적으로 일직선이어야 하며 종단정지장치(End stops)같은 적절한 크레인 고정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.
- (3) 크레인이 작업 중 레일을 따라 움직임을 멈출 수 있도록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. 강한 바람에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. 예를 들어, 트랙에 충분한 간격의 스톰 핀(Storm pin)이나 사용하지 않을 때 크레인을 고정시킬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.
- (4) 강한 바람에 영향을 받기 쉬운 크레인은 지면이나 관제소에서 실제 바람의 속도를 운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 다.
- (5) 바람의 속도가 작업하기에 불안할 정도이면 인양작업을 멈추어야 한다.
- (6) 인양작업 시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.
- (가) 기상 악화 예를 들어, 강풍, 빙판, 지나치게 춥거나 더운 날씨
- (나) 시계를 제한하는 미스트, 안개 등

#### 7.3 사람을 태우는 인양장비

- (1) 튼튼한 재질과 강도의 플랫폼이나 케이지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.
- (2) 차량관리를 위해 운전자만 태우는 인양장비를 제외하고 1 m 이상 고소로 올라갈 때에는 추락이나 끼임 방지를 위해 플랫폼이나 케이지에 펜스를 설치해야 한다.
- (3) 플랫폼이나 케이지로 올라가는 부분에는 손잡이와 발판이 갖춰져야 한다.
- (4) 사람을 태우는 인양장비는 용도에 맞아야 하며 적절한 '안전계수'를 고려해야 한다.
- (5) 화물용 인양장비로 사람을 인양할 경우에는 구조작업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만 사용한다.

#### 7.4 인양장비 및 그 부속품의 유지관리

- (1) 사업주는 모든 인양장비와 그 부속품의 상태가 용도에 적합한지 점검해야 한다.
- (2) 점검대상은 멀티트립스링(Multi-trip sling), 원트립스링(One-trip sling), 중 간크기벌크컨테이너(IBC), 로프, 웨빙(Webbing), 체인 등이 포함된다.
- (3) 사업주는 제조사의 와이어로프 스링(Sling)에 대한 테스트 증명서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. 테스트 증명서가 없다면 사업주는 테스트를 통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.
- (4) 원트립스링은 적재물이 도착하여 사용한 후에는 버리고 재사용하지 말아야한다.
- (5) 인양장비가 적재물을 끄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(6) 인양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 중에는 물론이고 작동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

(7) 모든 안전검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'안전검사 고시(노동부고시 제 2010-15호)'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.

# 8. 미끄러짐과 헛디딤

도크작업 관련 사고의 1/4이상이 미끄러짐과 헛디딤 사고이다. 사고는 골절, 탈골 및 장기결근으로 이어진다. 이런 사고는 '어쩔 수 없는 일'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며 때로는 간단한 조치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. 미끄럼과 헛디딤의 유해인자는 다음과 같다.

- (1) 고르지 않거나 젖어 있거나 얼어있는 적재물의 표면
- (2) 악천후
- (3) 보행로, 램프, 계단에 부적합한 바닥재 혹은 표면재 사용
- (4) 갑판·파이프 이음 작업
- (5) 작업장의 조면부족

## 8.1 예방대책

- (1) 도크 구내는 풀어진 물건을 정리정돈해야 한다. 화물 통로에는 주기적으로 정리정돈작업을 실시한다.
- (2) 흩어진 인양 부속물들은 잘 보관되어야 한다.
- (3) 적합한 바닥재/표면재를 사용한다. 경사로와 램프는 미끄럼방지 표면재를 사용한다.
- (4) 바닥, 계단 및 보행로는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.

- (5) 악천후나 조수 조건으로 표면이 미끄러우면 차량과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(6) 바닥 특히, 통행로에 기름이 흘러서는 안 된다.
- (7) 헛디딤 위험이 있는 곳에는 눈에 띄는 색깔의 페인트로 표시해야 한다.
- (8) 안전화를 선정할 때에는 작업 및 기상조건을 고려해야 한다. 빙판길에는 징 (Studs)이나 체인이 필요하다.
- (9) 오염물질이 묻은 통로나 보행로를 피한다.
- (10) 충분한 조명을 공급한다.

## 9. 익사방지

- (1) 작업자가 수면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는 추락방지펜스를 설치한다.
- (2) 작업자가 수면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는 구명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.
- (3) 구명장비는 눈에 잘 띄어야 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놓여 있어야 한다.
- (4) 구명장비는 구명부표(Life buoy), 구명줄, 구명폴대(Pole)가 포함된다.

#### 10. 조명

도크작업은 통상적으로 24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조명은 매우 중요 하다. 유해인자를 빨리 그리고 쉽게 볼수록 위험에서 피할 수 있다. 조명은 다음 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.

- (1) 밝은 조명이 필요한 곳
  - (가) 계단, 보행자와 차량 진입로
  - (나) 야간에 상·하역작업이 이루어지는 곳, 선상진입로 및 선상작업이 이루어지는 곳
- (2) 자연 채광도 좋으나 눈부심은 없어야 한다.
- (3) 비상등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.

## 11. 밀폐공간작업

밀폐공간작업에 대해서는 '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(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)'에 자세히 나와 있다.

- (1) 밀폐공간의 종류는 '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8]'에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다.
- (2)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자뿐만 아니라 적절한 훈련과 장비 없이 그들을 구하려는 사람들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.
- (3) 밀폐공간에서는 유해물질이나 위험한 상황(예를 들어, 산소결핍)으로 인하여 사망 혹은 심각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.
- (4) 밀폐공간은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유해인자에 의해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다.
- (가) 산소결핍
- (나) 화재·폭발
- (다) 독성가스, 흄 및 증기의 축적

- (라) 컨테이너의 불완전한 환기
- (마) 체온을 위험수준까지 올리는 고열조건
- 11.1 밀폐공간작업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
  - (1) 독성 흄이나 인화분위기를 측정하고 환기하여 제거한다.
  - (2) 액체나 가스가 들어온다면 잠금 밸브를 잠가 멈추게 한다.
  - (3) 산소결핍이 우려되면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한다.
  - (4) 작업자가 밀폐공간작업에 적합한지 확인한다. 예를 들어, 훈련여부, 신체 적합여부, 사전 건강검진, 개인보호구장구(PPE)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다.
  - (5) 구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 필요한 장비, 훈련 및 실습이 필요하며 제공된 장비가 실제 공간에 적합한지도 결정한다.
  - (6)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게 한다.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투입되기 전에 모든 안 전요소가 갖추어졌는지 점검한다.
  - (7) 작업자들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자 간 그리고 외부 사람과 통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. 특히, 육안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욱 중요하다.

### 12. 개인보호구(PPE)

- (1) PPE는 오직 마지막 방호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. 공학적 관리 등 다른 관리방법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PPE가 필요하다면 사업주는 구입하여 작업자에게 무료로 공급해야 한다.
- (2) 개인보호구에 지급계획서 서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서식 47]에 나와 있다.

- (3) 적절한 PPE를 선택하려면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.
- (가) 누구에게 무엇이 노출되는가?
- (나) 얼마동안 노출되는가?
- (다)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가?
- (4) PPE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- (가)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센터의 인증마크를 획득해야 한다.
- (나) 크기, 밀착성, 무게 및 사용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선택한다.
- (다) 한 개 이상의 PPE를 사용할 때에는 호환이 잘되어야 한다. 예를 들어, 안전고글이 호흡보호구의 밀착성을 떨어뜨려 공기의 누설현상(Leakage) 을 유발할 수도 있다.
- (라) 사용법을 알려주고 훈련시켜야 한다. 왜 필요하고 언제 사용해야 하며 제한점이 무엇이고 결함을 어떻게 발견하고 보고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.
- (마) 호흡보호구의 방진필터를 교환하는 것처럼 교환하는 부분이 원래의 부속 품과 잘 맞아야 한다.
- (바) 책임자를 선정하여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한다.
- (사) PPE는 잘 관리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잘 보관되어야 한다.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고 최적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.
- (아) PPE 착용에는 '잠깐이면 될 일'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.

# 13. 응급처치

- (1) 작업자가 작업 중 상해나 질병을 얻으면 즉각적인 조치를 받아야 한다.
- (2) 적어도 다음은 갖춰져 있어야 한다.
- (가) 적절한 응급처지상자
- (나) 응급처치를 담당할 지정인력
- (다) 구체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작업자에 대한 정보
- (3) 작업장에서 유해·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수준을 결정한 다.
- (4) 필요하다면 정식인증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하고 응급처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한다.